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55호 2019. 1. 2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2호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6호 도로의 지정·공고 ----- 1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 2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1980-25의 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02-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천로 1980-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기곡천)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8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3-47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 기존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676-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48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676-2, 676-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60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231-5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7 (사직동)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기존도로명)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16-1, 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361-7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7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130-1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226-36 (증산동)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해당구간내공원 명칭활용
8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69-1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426-45 (증산동)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해당구간내공원 명칭활용
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39-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길 22-64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9건	도로명주소	9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02-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천로 1980-25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기곡천)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8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3-47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표기준로 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676-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48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676-2, 676-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960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231-5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7 (사직동)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기존도로명)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16-1, 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361-7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130-1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226-36 (증산동)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해당구간내공원명칭활용	
부여	8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69-1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426-45 (증산동)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해당구간내공원명칭활용	
부여	9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39-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길 22-64	20190125	20190125	2019012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9-82호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삼척시장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한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관내 타 시설과 유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타 지역의 유사한 시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수상레저기구이용료를 상향조정하여 이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 봄철 행락기간(4월)을 포함하여 운영기간을 늘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주민 여가 선용기회를 확대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시설 운영기간 조정(안 제10조 제1항)
- 나. 이용료 상향 및 기구 이용시간 조정, 안전상 미 운영중인 기구 삭제 및 신설 기구 추가(안 제11조 제2항 별표)
- 다. 이용료 면제조항 삭제(안 제12조 제1항)
- 라. 폐광지역 주민 이용료 감면 조항 추가, 주말 및 공휴일 이용료 감면 적용 배제(안 제12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참조: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제정(안)	수정 의견서		비고
	수정(안)	수정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E-mail : moon0424@korea.kr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공원녹지과
 - 전 화 : 033 - 570 - 4067
 - 팩 스 : 033 - 570 - 4069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공원녹지과(☎ 033-570-40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료의 50%”를 “평일에 한하여 이용료의 50%”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수상레저기구 이용료(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이용기구	인수	이용 시간	인수	이용료	비 고
오리보트	2~3인승	30분	2~3인승	8,000	
오리보트	4인승	30분	4인승	10,000	페달
오리보트	4인승	30분	4인승	16,000	전동
수상자전거	2인승	30분	2인승	6,000	
수상자전거	2~3인승	30분	2~3인승	8,000	
페달보트	4인승	30분	4인승	10,000	
투명페달보트	4인승	30분	4인승	8,000	

※ 이용료는 1대당 가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기간 및 휴업일)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위탁 또는 계절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기간 및 휴업일)①-----4-----
제12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8.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삭 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삼척시민, 삼척시와 자매결연 도시 주민 2.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 <신 설>	② ----- 평일에 한하여 이용료의 50%--.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삭 제> 3.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3.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6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84-2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변경:1차)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84-2 외 1필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109.7m, 너비 : 4.0m, 면적 : 412㎡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교가리	784-2	답	694	634	60	김**
근덕면 교가리	산110	임	2,751	2,399	352	